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

판 결

사 건 2002가단5050 공작물철거
2002가단8097(병합) 공작물철거 등
원 고 ○○광업 주식회사
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3-1
대표이사 김○○
소송대리인 임○○
피 고 1. 오○○
2. 윤○○
3. 박○○
4.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
청주시 상당군 북문로 3가 59
대표자 이사장 장○○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기태
변 론 종 결 2002. 11. 28.
판 결 선 고 2002. 12. 12.

주 문

1.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18 답 3762㎡ 중
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지상에 설치
되어 있는 화장실 1.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원고의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

교회유지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18 답 376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4, 25, 26, 27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1.5㎡ 및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7 전 60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18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각 인도하라는 판결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18 답 3762㎡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)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지상에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이 점유·관리하는 화장실 1.5㎡가 설치되어 있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○○의 소유인데, 원고는 김○○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.

[증거] 갑 제1, 5호증, 제12호증의 1 내지 9, 제19호증, 제22 내지 27호증,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검증결과, 감정인 김○○의 측량감정결과, 변론의 전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

1.5㎡를 철거하고,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하여도 위 화장실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,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과 함께 위 화장실을 점유·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원고의 화장실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.

또한 원고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7 전 605㎡의 소유자인 서○○으로부터의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18㎡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도 구하나, 원고가 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7 전 605㎡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컨테이너 박스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인도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안덕호